

보훈문화진흥법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65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 의 자 : 윤한홍 · 박형수 · 김상훈
최보윤 · 추경호 · 최수진
권성동 · 김미애 · 한기호
권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보훈 법령 체계는 국가가 필연적으로 주체가 되는 경제적 보상
에 대해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보
훈 문화 창달을 위한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보훈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이를 확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규정하
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최근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및 사망으로 인해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
을 통한 역사 계승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보훈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가 약화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관계기관 간
협업 유인이 부족하여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체
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훈문화 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존재해 보훈의
의미가 점차 희미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 법의 제정을 통해 보훈문화에 대한 정의와 기본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 보훈문화진흥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보훈문화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적 정책 기반을 제도화해 궁극적으로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사회를 위해 특별히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려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보훈문화”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이는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훈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독립·호국·민주의 균형과 조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일반 국민의 보훈문화 활동과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기본 원칙으로 함(안 제5조).

라. 국가보훈부장관은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보훈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의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

- 바.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 등의 기관을 보훈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9조).
- 사.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보훈문화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 아. 민간주도의 보훈문화 진흥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보훈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훈문화 진흥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보훈문화진흥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자.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에 관한 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5조).

보훈문화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문화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려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문화”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이는 문화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2.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등 공무수행
3. “보훈문화콘텐츠”란 보훈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 자료 또는 정보(이들의 복합

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보훈기념행사”란 제2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행사로서, 그 정신을 기리는 활동을 말한다.

5. “보훈문화 교육”이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실과 그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념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훈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훈문화진흥 정책 수립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문화진흥 정책을 수립·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역사가 균형있고 조화롭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할 것
2.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
3. 보훈문화 활동 참여와 보훈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4. 보훈문화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제6조(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을 위하여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보훈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보훈문화진흥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보훈문화 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보훈문화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민간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훈문화콘텐츠의 개발·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9. 보훈문화진흥정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10. 그 밖에 보훈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훈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보훈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사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보훈문화진흥에 관한 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보훈문화의식 및 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과 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훈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진흥

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보훈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지정사항을 다시 지정할 수 없다.

⑦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제6항에 따른 재지정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훈문화 교육 실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보훈문화교육 사업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반 국민에 대한 보훈문화 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보훈문화 교육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보훈문화 교육
4. 초·중등학교의 교원에 대한 보훈문화 교육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보훈문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훈문화 국제교류의 촉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진흥을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 행사 기획, 보훈문화콘텐츠 개발, 보훈문화 관련 국제 행사의 참여 및 국내 유치 등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교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훈문화진흥을 위한 민간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민간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학술 활동
 2. 보훈문화 교육 및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활동
 3. 보훈문화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활동
 4. 보훈기념행사 또는 보훈문화 캠페인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문화 확산 활동
 5. 보훈문화콘텐츠의 개발·보급·지원 활동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훈문화진흥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 등을 보훈문화진흥기관(이하 “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그 밖에 보훈문화를 진흥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

② 진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보훈문화 교육 및 그에 대한 지원

2.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3.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전시·행사 등 문화사업 및 그에 대한 지원

4.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촉진 사업 및 그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진흥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진흥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승낙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④ 진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진흥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진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진흥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진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지정사항을 다시 지정할 수 없다.

④ 진흥기관의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훈문화진흥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에 관한 정보 등을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보훈문화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보훈문화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진흥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